[서식 예] 건물인도청구의 소(경락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, 상가)

소 장

원 고 ㅇㅇ주식회사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대표이사 〇〇〇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최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정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3. 이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건물인도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원고에게,
 - 가. 피고 최◇◇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○○○㎡ 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6,
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가)부분 ○○.○㎡를,
 - 나. 피고 정◇◇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○○○㎡ 중 별지도면 표시 2, 3, 7,
 6,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나)부분○○.○㎡를,
 - 다. 피고 이◇◇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○○○㎡ 중 별지도면 표시 3, 4, 8, 7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다)부분 ○○.○㎡를

각 인도하라.
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,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의 각 제1번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주식회사 ◈◈은행이 신청한 ○○지방법원 20○○타경○○○ 부동산경매사건에서매수신고하여,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를 금 ○○○원에 매수하여, 20○○. ○. ○.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.

위 각 부동산들의 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는 신청외 주식회사 ◈◈은행의 제1번 근저당권에 앞서는 용익물권이 전혀 없었고, 갑구에도 신청외 주식회사 ◈◈은 행의 제1번 근저당권 설정일 이전의 가등기·가처분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, 원고는 위 매각대금을 다 냄으로써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.

- 2. 가. 피고1 최◇◇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○○○㎡ 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6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가)부분 ○○.○㎡를 당시 소유자인 주식회사 ◎◎으로부터 임차하여 수퍼마켓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인바,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원만히 돌려 받기 어렵게 되자, 위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도 없이 항고 및 재항고를하는 등 그 절차의 지연을 획책하였고,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에 있어서도 이사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점유부분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으며,
 - 나. 피고2 정◇◇○는 199○. ○. ○.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○○○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, 3, 7, 6,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나)부분○○.○㎡ 를 역시 주식회사 ◎◎으로부터 전세금 ○억원, 존속기간 20○○. ○. ○.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전세권자로서 이를 미용실로 사용하고 있으나, 위 부동산경매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어지고 그 전세금도 돌려 받기 어렵게 되자, 위 피고1 및 피고3과 함께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도 없이 항고 및 재항고를 하는 등 그 절차의 지연을 획책하였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에 있어서도 이사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점유부분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고,

- 다. 피고3 이◇◇○ 199○. ○.경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○○○㎡ 중 별지도 면 표시 3, 4, 8, 7,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(다)부분 ○○.○㎡를 역시 주식회사 ◎◎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○억원에 임차 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으나, 위 부동산경매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어지고 그 임대차보증금도 돌려 받기 어렵게 되자, 위 점유부분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청구취지 제1항과 같은 부분을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, 2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1. 갑 제2호증건축물대장등본1. 갑 제3호증매각허가결정문사본1. 갑 제4호증매각대금납입영수증1. 갑 제5호증임대차관계조사서사본

첨 부 서 류

| 1. | 위 입증방법 | 각 1통 |
|----|-----------|------|
| 1. | 법인등기사항증명서 | 1통 |
| 1. | 토지대장등본 | 1통 |
| 1. | 소장부본 | 3통 |
| 1. | 송달료납부서 | 1통 |

2000. 0. 0.

위 원고 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부동산의 표시

00 시 00구 00동 00

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 지붕 2층 근린 생활시설

1층 ㅇㅇㅇm²

2층 〇〇〇m²

지층 〇〇〇㎡. 끝.

도 면

○○ 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평면도

| 1 | | 2 | | 3 | | 4 |
|---|-----|----|-----|----|-----|----|
| | (가) | | (나) | | (다) | |
| 5 | | 6 | | 7 | | 8 |
| | (라) | | (마) | | (비) | |
| 9 | | 10 | | 11 | | 12 |

| 관할법원 | ※ 아래(1)참조 | 소멸시효 | 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 | |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제출부수 |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| | | | |
| 비 용 | 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| | | | |
| 불복절차 및 기 간 | | | | | |
| 기 타 | 채무자·소유자 또는 여 인도명령을 할 수 | 부동산 점유지 있도록 규정하 | 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는 사(대항력 없는 점유자)에 대하 하고 있으므로, 위 소장은 매각 항력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 | | |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1.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2.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: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(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).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